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무총리실의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

○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음

4. 관련법령

○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4조, 제11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

○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코자 하는 것으로

○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